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9. 25.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문단번호
참조	
배경	1~2
적용	한3.1
회계 논 제	3~7
결론	8~9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1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결론도출근거]

IFRIC 10의 결론도출근거 (BC1-BC12)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은 문단 1~14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배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여부는 매 보고기 간말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러나 후속 보고기간말에 상황이 변동되어 동일자에만 손상검토를 하였다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이 환입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의 상호관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적용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 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문단 28은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 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 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24는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 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 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결론

-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 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 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10.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14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문단 1, 2, 7, 8을 개정하고 문단 5, 6, 11, 12, 13을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10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 BC2 IAS 34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재무제표에, IAS 36은 과거 연차보고기간에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 391)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을 후속 회계연도에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환입하지 않을 것이다.
- BC3 그러나 IAS 34는 중간재무제표에 누적기간측정을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

¹⁾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 다.

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금액을 환입할 것이다.

- BC4 IFRIC은 2006년 1월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18호(D18)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을 발표하였다. IFRIC은 50건이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 BC5 IFRIC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기준서 간의 상충을 다루려는 D18은 IFRIC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기된 논점이 IAS 34를 개정함으로써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IFRIC의 견해를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IFRIC은 IASB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4의 개정을 원하지 않았으며 IFRIC이 해석서로 계속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 BC6 D18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해석서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및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IFRIC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재무제표에 환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IFRIC은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나타난 것처럼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D18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해석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BC7 IFRIC은 동일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을 각각 동일한 취득원 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A와 기업 B의 사례를 고려하였다. 기업 A는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 B는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은 동일하다. IFRIC은

첫 분기에 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 A는 첫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회복되어 반기말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 B가 반기말에만 손상검사를 한다면 반기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A가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으면 기업 B의 접근법과 비교할 때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IFRIC은 손상차손의 인식이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의 시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8 IFRIC은 IAS 34에 첨부된 적용사례에서 그 기준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공하고, 문단 B36에서 IAS 34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하게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 BC9 IFRIC은 IAS 36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의 환입과 IAS 392)에 따라 인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는 것은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는 IAS 34의 보다 일반적인 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BC10 더 나아가 IFRIC은 IAS 36의 문단 BC189와 IAS 39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영업권에 관련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 근거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모두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하다.

- BC11 IFRIC은 이러한 결론을 IAS 34와 다른 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IFRIC은 이러한 분야를 검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해석서와 그 밖의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원칙을 도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IFRIC은 IAS 34와 다른 기준서 사이의 상충이 발생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이 결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BC12 D18은 완전한 소급적용을 제안하였다. 많은 검토의견이 완전한 소급적용이 IAS 36의 최초채택 요구사항보다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를 영업권의 손상에 대한 IAS 36 및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에 대한 IAS 39를 채택하기이전 기간에는,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경과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3.1과 한10.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 및 경과규정과 관련된문단 10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0호(IFRIC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0호가 IFRIC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10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된 손상차손이 변동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회계논제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 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2. 결론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 11 22 계정	주가게므ㅂㄱ이 소사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lementation	
2007.11.25. 1978	8 2 11 2 2 4 6 8	Implementation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5. 9. 25.	기업회계기준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